

미성년 젠더확정치료 금지 법안의 합헌성 논의  
: 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의 심리 동향을 중심으로

UC Berkeley School of Law 박사과정 이누리

1. 들어가는 말

‘젠더확정치료’(Gender-Affirming Care)란 타고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불일치로부터 비롯되는 불편감 및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법들을 가리킨다. 미국 내 젠더확정치료의 역사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국심리학회(APA)가 1980년 ‘젠더 불일치증’(gender identity disorder)을 공식적으로 진단가능한 질병 목록에 등재한 후로는<sup>1)</sup> 더욱 보편화되어 현재는 미국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전문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sup>2)</sup>

젠더확정치료가 이처럼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와 침습적 요법을 포함하는 의학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2024년 12월 현재 조지아, 텍사스, 테네시 등 26개 주에서 주법을 통해 금지되어 있다.<sup>3)</sup> 2024년 8월 기준 이 법들의 적용을 받는 만 13~17세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전국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39.4%로, 총 118,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sup>4)</sup>

1) 미국심리학회는 2013년 동 병명을 ‘젠더 불쾌감’(gender dysphoria)으로 개칭하였다.

2) Standards of Care for the Health of Transgender and Gender Diverse People, Version 8, 23 Int’l J. of Transgender Health S43 (2022); See Borah L, Zebib L, Sanders HM, Lane M, Stroumsa D, Chung KC. State Restrictions and Geographic Access to Gender-Affirming Care for Transgender Youth. JAMA. 330(4), 375 (2023).

3) 이 중 아칸소주와 몬타나주는 법원의 보류 결정으로 법의 적용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애리조나의 경우 젠더확정수술만을 금지하고 있다.

4) Redfield, Elana. et al. (April 2023) “The Impact of 2024 Anti-Transgender Legislation on Youth”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publications/2024-anti-trans-legislation/\(2024.12.23.최종방문\).](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publications/2024-anti-trans-legislation/(2024.12.23.최종방문).)

금지법안의 찬성파들은 치료를 받는 당사자들이 온전한 행위능력을 갖춘 성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요법이 비가역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불법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금지법안의 반대파들은 젠더확정치료 금지가 수정헌법 제14조 평등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소송 제기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위헌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10건 이상 진행 중이며,<sup>5)</sup>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송은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3인과 그 가족이 테네시주의 금지법안에 대해 제기한 L.W. v. Skrmetti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초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단 및 금지명령(injunction)을 이끌어냈지만, 연방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혔고, 상고를 거쳐 현재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보고서는 연방대법원 위헌 심판의 도화선이 된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젠더확정치료 금지법안의 내용을 살펴본 후, L.W. v. Skrmetti 사건에 대한 연방 하급심 판결과 그로부터 드러난 주요 쟁점을 요약하고, 최근에 진행된 대법원 구두심리에서 다루어진 양측의 주장을 일별한 뒤 마지막으로 재판의 함의와 향후 전망을 짚어 보고자 한다.

## 2. 젠더확정치료 금지 법안의 개요

이 위헌심판의 도화선이 된 입법은 2023년 3월 테네시주 주지사 빌 리가 서명하고 동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젠더확정치료 금지 법안’(이하 ‘SB1 법안’)이다.<sup>6)</sup> 이 법안은 만 18세 이하에 대한 젠더확정치료를 금지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효 직후 테네시 주법 제68장 제33절에 통합된 이 법안은 제101조~

---

5) Yale Law School. (July 1, 2024) “White Paper Addresses Key Issues in Legal Battles over Gender-Affirming Health Care” [https://law.yale.edu/yls-today/news/white-paper-addresses-key-issues-legal-battles-over-gender-affirming-health-care?utm\\_source=chatgpt.com](https://law.yale.edu/yls-today/news/white-paper-addresses-key-issues-legal-battles-over-gender-affirming-health-care?utm_source=chatgpt.com)(2024. 12. 23. 최종방문).

6) Tenn. Code Ann. § 68-33-101-§ 68-33-107 (2023).

110조의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01조는 법안이 통과된 배경과 입법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102조는 용어 정의, 제103조와 제104조는 금지대상 행위 및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105-110조는 이행에 관한 조항이다.

해당 법안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젠더확정치료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의학적 처치다. 여기서 의학적 처치란 ① 신체의 일부에 침입하거나, 이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는 수술적 요법과, ② 호르몬 및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를 처방하거나 복용시키는 비수술적 요법을 포괄한다.<sup>7)</sup> 이 규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적용된다. 첫째, 의료인들은 선천적 질환, 성조숙증, 질병, 또는 신체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할 수 있다.<sup>8)</sup> 둘째, 법안이 발효된 2023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장기 호르몬 치료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시행할 수 있다.<sup>9)</sup>

제101조에 언급된 입법 배경 및 목적은 주로 법안 찬성 측의 논리를 기술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젠더 불쾌감이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학적 처치가 미성년자에게 영구적 불임, 질병, 치명적인 정신건강상의 영향 등 여러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101(a)(b)). 아울러, 이러한 요법들이 본질적으로 실험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기적 해악이 알려져 있는 단기적 이익을 압도할 수 있다고도 언급한다(§101(c)). 또한, 미성년자들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101(h)), 관련 치료 과정에서 의사들이 환자의 이익보다는 금전적인 득실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언급도 등장한다(§101(j)). 일부 전문 클리닉이 홍보용으로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사용한 일화들과(§101(l)) 함께 이들 클리닉의 행위로 인해 의업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점도 특

---

7) Id. § 68-33-102(5).

8) Id. § 68-33-103(b)(1)(A).

9) Id. § 68-33-103(b)(1)(B).

기할 만하다(§101(m)).

법안 이행을 위한 장치로는 금지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징계, 주 법무장관 및 보고관의 민사소송권, 그리고 금지된 의료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미성년자 부모의 민사소송권이 규정되어 있다.

### 3. 소송 개요 및 하급심 판결

#### 1) 소송 개요

위 법안이 통과된 지 약 한 달 만인 2023년 4월 20일, 테네시주 내쉬빌에 거주하는 사만다 윌리엄스, 브라이언 윌리엄스 부부와 그들의 15세 트랜스젠더 딸, 익명으로 참여한 다른 두 명의 미성년 트랜스젠더 원고와 그 가족, 그리고 멤피스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인 수잔 레이시 박사가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는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테네시 ACLU, Lamda Legal, Akin Gump LLP가 선임되었다. 아울러, 중요한 공익적 함의를 갖는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의 개입을 허용하는 「시민권법」(Civil Rights Act)<sup>10)</sup>에 의거해 연방 법무부가 원고측에 합류하였다.

원고들은 이 법안이 두 가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이 법은 젠더 불쾌감을 겪는 미성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4조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를 결정할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sup>11)</sup> 그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젠더 불쾌감은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의학적 증상으로서 적시에 치료받지 않을 경우 불안, 우울증,

---

10) Title IX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42 U.S.C. § 2000h-2

11) L.W. v. Skrmetti Complaint. 148-171.

자살 시도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sup>12)</sup> 둘째, 젠더확정치료의 안정성과 효과는 수십 년의 임상적 데이터로 입증되어 있다. 셋째, 젠더확정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금지되고 있는 호르몬 치료, 수술 요법 등의 모든 처치가 다른 의료 목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원고들은 연방법인 소위 오바마 케어, 즉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보험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제1557부가 문제의 법에 대해 우월적 효력을 가지며, 문제의 법은 동 연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sup>13)</sup>

원고들은 법원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문제의 법안이 헌법상 평등조항,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되며 상위법인 오바마 케어 제1557부에 의해 무효화되었다고 선언해 줄 것. 둘째, 피고와 그 고용인들 및 대리인들이 동 법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임시 및 영구적 금지조치를 명령해 줄 것. 셋째, 원고들의 소송비용을 보전해 줄 것. 넷째, 그 외에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조치를 명령해 줄 것.<sup>14)</sup>

## 2) 하급심 판결

이 사건을 심리한 테네시주 연방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8일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금지명령을 발부하였다.<sup>15)</sup>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적법절차조항과 평등조항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여 일견 위헌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수술적 젠더확정 요법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명령하지 않았다.

먼저,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금지조치를 명령한 조항들이 자녀에 대

---

12) 특히, 미국의 모든 주요 의료협회가 젠더 불쾌감 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3) L.W. v. Skrametti Complaint. 172-190.

14) L.W. v. Skrametti Complaint. p 41-42.

15)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수술적 젠더확정 요법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발부하지 않았다.

한 의료를 감독할 수 있는 부모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평등조항과 관련해서는 트랜스젠더들이 평등조항의 보호를 받는 준보호대상 집단(quasi-suspect group)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법안은 성별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고, 그러한 차별적 규제에 적용되는 강화된 심사 기준<sup>16)</sup>을 만족시키기에는 테네시 주정부가 제시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테네시주는 항소하였고, 관할 연방항소법원(6th circuit)은 이 사건과 켄터키주의 유사 사건을 통합하여 심리하였다. 심리 결과, 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2023년 9월 28일자로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sup>17)</sup>

연방항소법원은 크게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하급심은 원고들의 권리 침해 여부만을 다루지 않고 법률 전체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 때 법률이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지 않았기에 법 적용의 오류가 있다. 둘째, 젠더확정치료와 같이 비교적 새로운 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법원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자녀의 의학적 처치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헌법상의 근본적 권리가 아니며, 이러한 확장적 해석은 근거 없다. 넷째, 주 정부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학적 처치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다섯째, 트랜스젠더는 평등조항이 보호하는 준보호대상 집단이 아니므로 원고측이 주장하는 강화된 심사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섯째, 호르몬 치료의 경우 FDA가 최종 승인하지 않은 요법으로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바, 주 정부는 FDA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 치료법에 대해 제한을

---

16)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는 문제된 법률이 침해하는 권리의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의 심사기준 중 하나가 적용된다. 가장 관대한 기준은 ‘합리적 근거 심사’(rational basis review)로,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이 정당한 이익의 부재 또는 해당 법률과 정당한 이익 사이에 관계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보다 엄격한 ‘중간 단계의 심사’(intermediate scrutiny)는 해당 법률이 중요한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거나, 그러한 목적의 실현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엄격한 ‘강화된 심사’(strict scrutiny) 기준은 입증책임을 정부측으로 전환시킨다. 즉, 주 정부가 해당 법률이 성차별적 이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위헌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Virginia (1996) 사건에서 “성별에 기반을 둔 모든 분류는 강화된 심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17) L.W. ex rel. Williams v. Skrmetti, 73 F.4th 408 (6th Cir. 2023).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대법원의 심리 동향

##### 1) 심리 개요

항소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4일부로 *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에 대해 상고를 허가하였고, 소송 준비단계를 거쳐 12월 4일 첫 구두심리가 개시되었다.

구두심리 개시 전 단계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헨리 맥마스터를 대표로 한 10명의 공화당 주지사<sup>18)</sup>들이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주목받았다. 미성년 젠더확정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10개 주의 주지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의견서는 주 정부의 의료 규제권을 강조하고, 주 정부가 이미 미성년자에 대해 문신 금지, 총기 소지 금지, 음주 금지 등 다양한 제한 입법을 합법적으로 시행해 왔음을 설명하면서, 연방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주 입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하였다.<sup>19)</sup>

12월 4일 진행된 구두심리에서는 모두발언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대법관들은 양측에 30건이 넘는 질문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심리에 임했는데,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론적 공방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

18) 앨러배마 주지사 Kay Ivey, 아칸소 주지사 Sarah Huckabee Sanders, 플로리다 주지사 Ron Desantis, 조지아 주지사 Brian Kemp, 미시시피 주지사 Tate Reeves, 미주리 주지사 Mike Parson, 몬타나 주지사 Greg Gianforte, 오클라호마 주지사 Kevin Stitt, 텍사스 주지사 Greg Abbott이 참여하였다.

19) Brief of Governor Henry Dargan McMaster and Nine Additional Governors as Amicus Curiae in Support of Respondents, *U.S. v. Skrmetti*.

## 2) 평등조항 위반

SB1 법안이 헌법상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하여, 법무부측은 법안이 남성 미성년자에게는 남성적 특징을 증진할 목적의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허용하지만 여성 미성년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의 출생 성별에 따라 특정 치료를 금지함으로써 명백히 성별에 기반한 분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특별히 호르몬 요법을 필요로 하는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해서도 허용 여지를 남겨 놓지 않는 테네시주의 법안은 심사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테네시주는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는 것과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는 것은 상이한 의료행위이고, 이것은 의료 목적에 기반한 분류에 속하며 성별 기반의 차별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강화된 심사기준 대신 합리적 근거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원고들이 정당한 이익 기준 미달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주 정부의 일괄적 규제는 합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토머스 대법관, 알리토 대법관은 *Geduldig v. Aiello*, 417 U.S. 484 (1974),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597 U.S. 215 (2022)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시각을 피력하였다. 위의 두 판결들은 임신 등 하나의 성별에만 해당되는 의료적 상태 및 그에 따른 처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성별에 기반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담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케이건 대법관은 트랜스젠더가 평등조항의 준보호대상 집단에 해당할 여지를 암시하였으며,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법의 영향을 받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자살 충동 등의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테네시주의 법이 개별적 심사 여지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비판하였다.

## 3) 기타 쟁점들



평등조항 이외의 쟁점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먼저, 의료 분야에 대한 사법자제와 관련하여 테네시주는 의료 규제는 주 입법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측은 코로나바이러스 보건위기 당시 대법원이 사법자제보다는 적극적 개입의 자세를 취한 점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도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대법원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외국 정부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젠더확정치료에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특히, 알리토 대법관은 미성년자 대상 젠더확정치료의 위험성이 효익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영국, 스웨덴, 핀란드의 연구 결과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임상적 목적으로만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할 수 있게 한 영국 정부의 규제 등을 거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언급된 해외 사례들의 경우 치료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어 일괄적 금지를 규정하는 이 사안과는 다르다고 반론하였다.

## 5. 합의 및 향후 전망

이 사건의 최종심 판결은 2025년 6월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의 결과는 직접당사자인 테네시주 외에도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25개 주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사건의 원고 법률대리인인 ACLU는 1986년부터 추진해 온 ‘LGBTQ & HIV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테네시를 포함하여 각기 다른 주에서 총 12건의 위헌소송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sup>20)</sup>

---

20) ACLU. (2024, Jul 25th). ACLU Announces Chase Strangio As Co-Director of LGBTQ & HIV Project. [https://www.aclu.org/press-releases/aclu-announces-chase-strangio-as-co-director-of-lgbtq-hiv-project\(2024. 12. 23. 최종방문\).](https://www.aclu.org/press-releases/aclu-announces-chase-strangio-as-co-director-of-lgbtq-hiv-project(2024. 12. 23. 최종방문).)

대법원이 근래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보수적인 판결들을 고려할 때,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sup>21)</sup> 이번 구두심리에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긍정하는 요지의 질의를 한 것은 케이건, 소토마요르, 잭슨 3인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에 그쳤다. 구두심리 내내 침묵을 유지한 고서치 대법관을 제외한 5인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원고측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길게 논박하기도 했다. 다만, 각 대법관의 접근법은 각자 상이하어, 알리토 대법관은 해외 사례와 과학적 불확실성을 강조하였고, 토머스 대법관은 이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로버츠 대법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 분야의 미묘한 사항들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회의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관심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과연 어떤 근거를 들어 테네시주의 법률을 옹호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트랜스젠더의 ‘준보호대상 집단’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문제는 트랜스젠더의 여성스포르츠 참여 권한, 여성화장실 이용 권한 등 아직 법의 판단을 받지 못한 여러 사회적 논쟁들에 직결되는 함의를 갖는다. 원고측은 법률이 명백히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담고 있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삼았고, 준보호대상 집단 논거는 보조적으로 제시했을 뿐이지만, 케이건 대법관, 알리토 대법관, 캐버노 대법관 등이 관련 질의를 던진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최종 판결문이 이 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잔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치료를 결정할 부모의 헌법적 권리 문제이다. 원고측은 1심 및 항소심에서 이 권리를 주요 논거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쟁점에 대해 상고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은 자녀의 교육, 의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재량적 권리를 옹호해 온 만큼, 이 법률이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판결로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두심리 도중 보수

---

21) Ian Millhiser, “The horrifying implications of today’s Supreme Court argument on trans rights,” VOX, Dec 9th, 2024

성향의 배럿 대법관, 캐버노 대법관은 테네시주측 대리인에게 관련 질의를 던져, 적법절차 조항에 기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모들의 권리는 이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